

「합정재정비촉진지구」

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

2014. 09 .

 마 포 구

상정개요

■ 상정사유

공동개발로 결정된 획지계획에 대하여
공동개발자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하여
획지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임

■ 사업의 개요

위 치	마포구 양화로 61
면 적	531m ²
용도지역	일반상업지역
도시계획	재정비촉진지구/ 지구단위계획구역

■ 위치도



추진경위

2003.11.18

-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

2005.05.06

-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

2007.07.12

-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

2008.12.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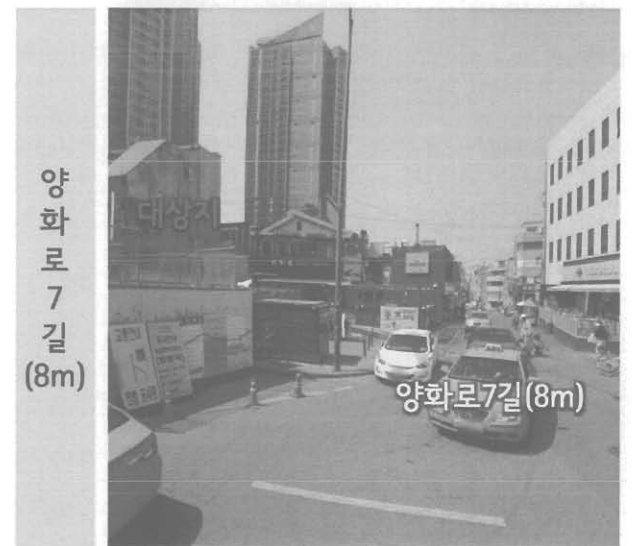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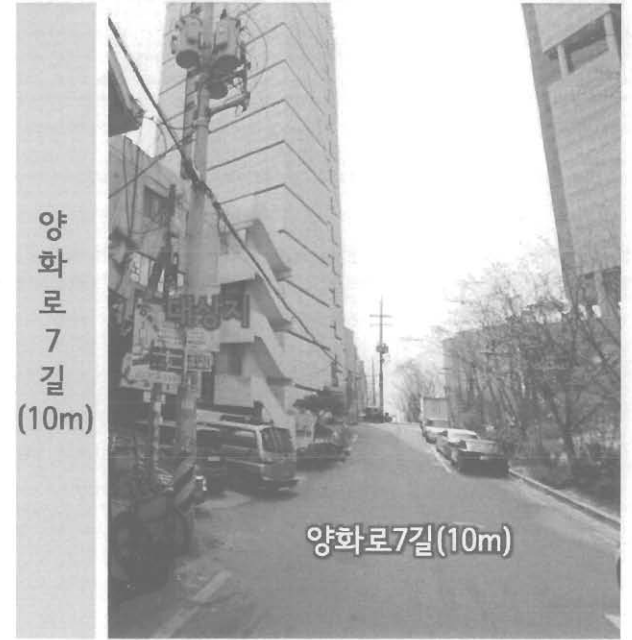
-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

2010.01.21

-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

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

대상구역현황



전
경
사
진

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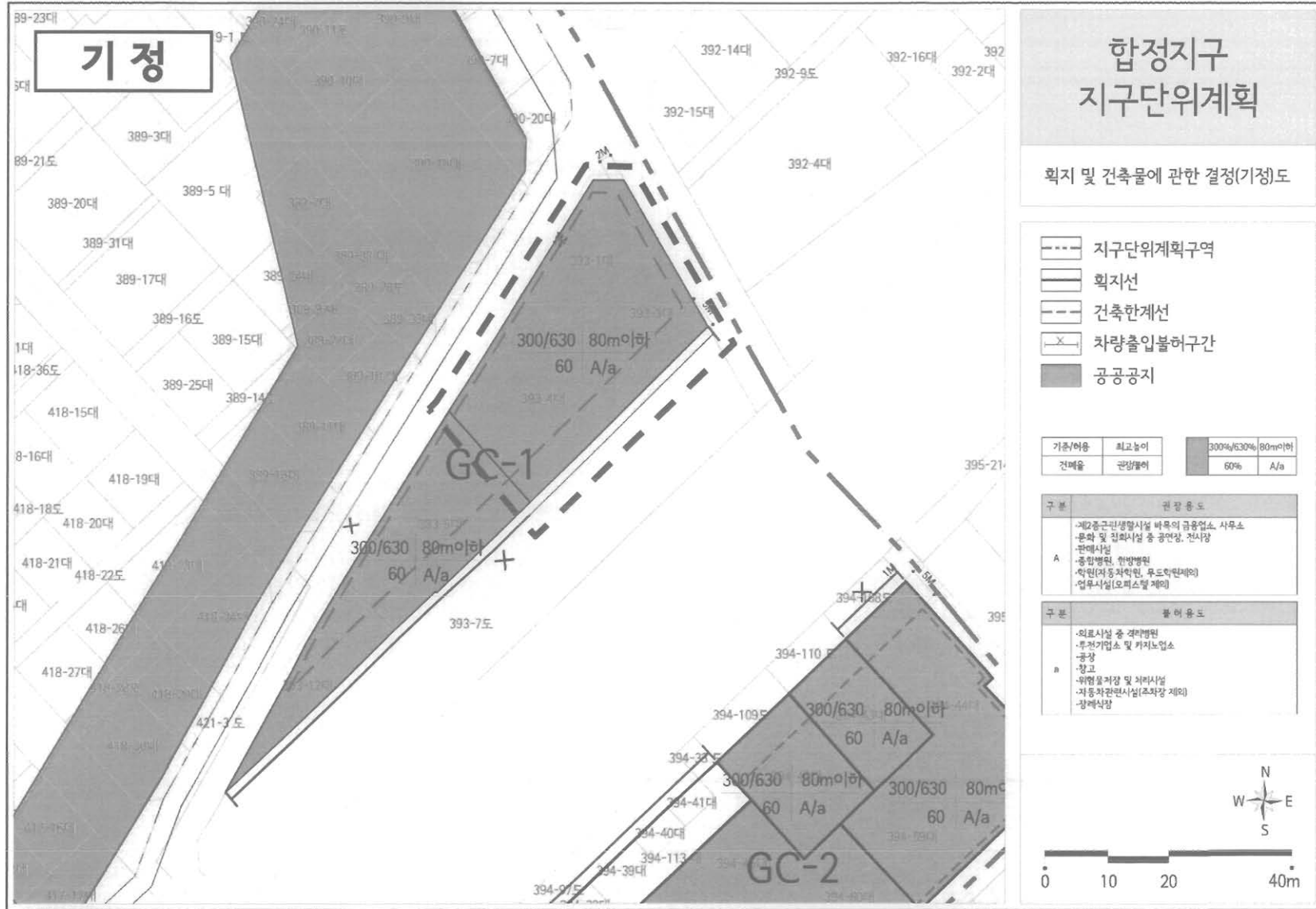
가구번호	기 정		변 경		비고
	위 치	면적(㎡)	위 치	면적(㎡)	
GC-1	양화로 63, 서교동 393-3, 양화로 61	1,026.6	양화로 63, 서교동 393-3	495.6	
			양화로 61	531	

■ 변경사유서

위 치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1 (가구번호 GC-1)	○ 양화로 63, 서교동 393-3, 양화로 61의 공동개발 획지를 ⇒ 양화로 63 및 서교동 393-3, 양화로 61로 획지계획 변경	○ 인접필지 소유자가 공동개발 반대 및 토지 매각에 불응하여 공동개발이 불가하므로 획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함 ※ 2010년 10월부터 공동개발 협의 7회 및 공동개발 요청서 2회 등기발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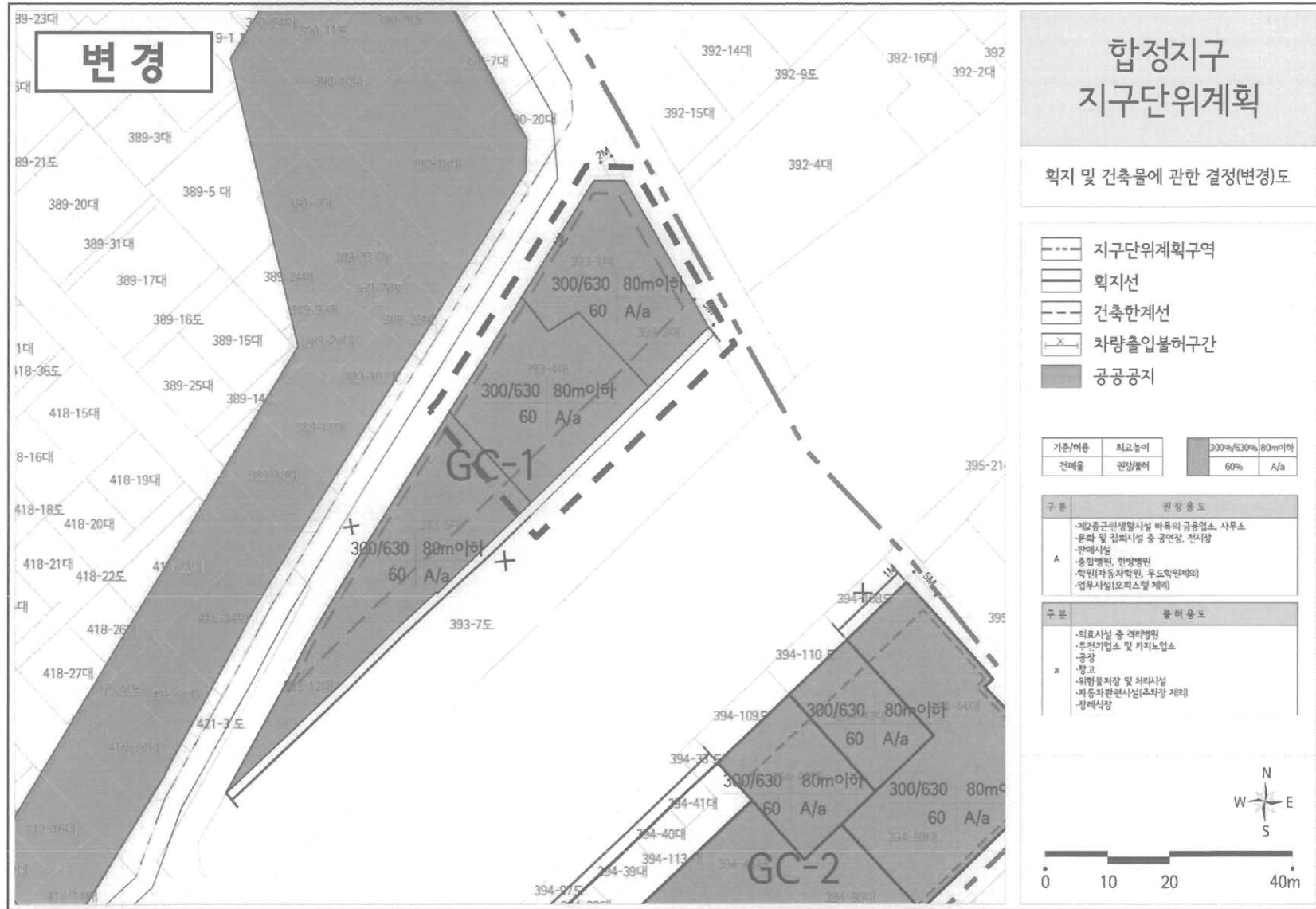
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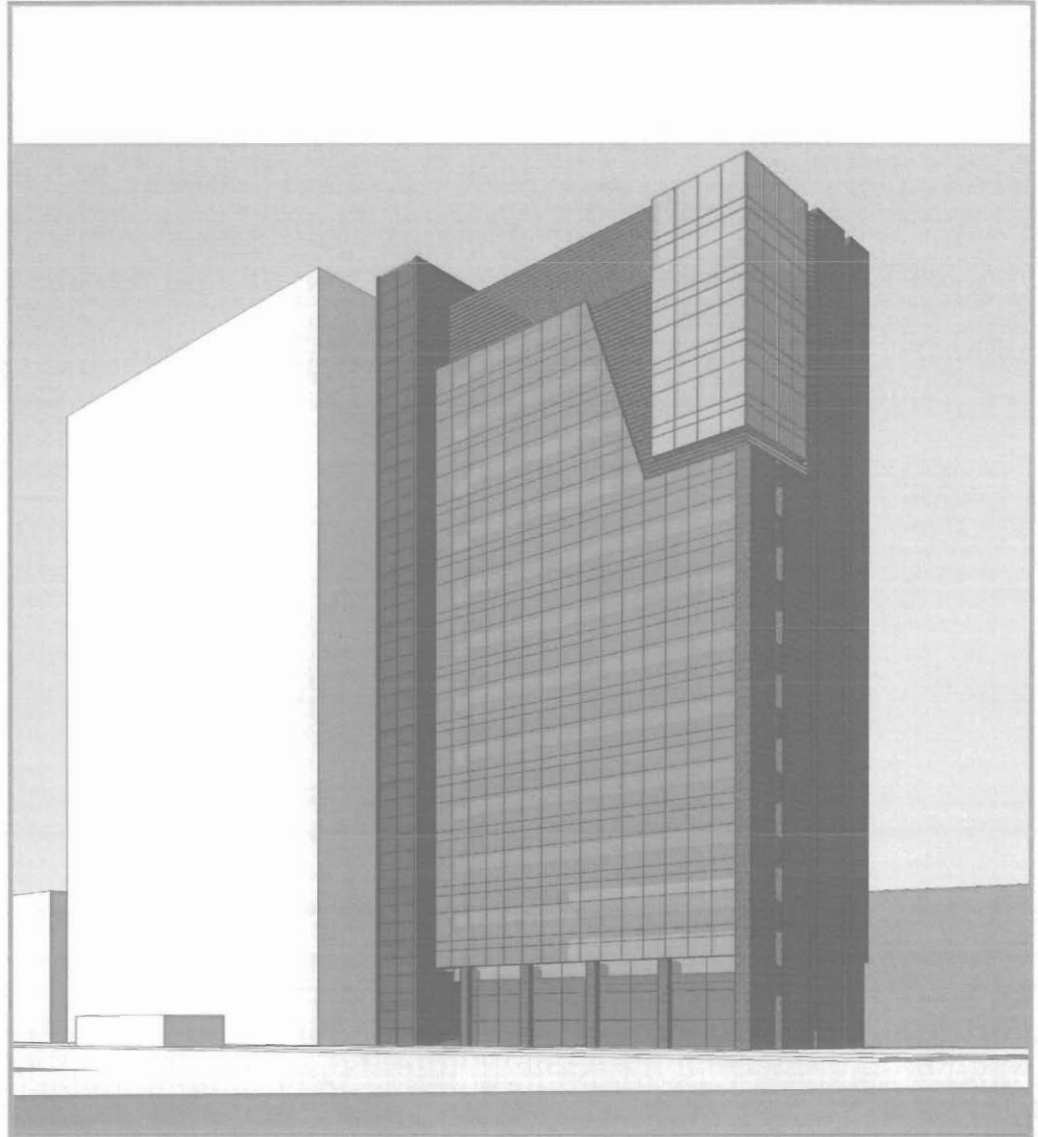


건축계획 예시(안)

■ 건축개요

구분	건축계획(안)
대지면적	531 m ²
용도	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
건축면적	315 m ²
연면적	4,065 m ²
건폐율	59%
용적률	594%
규모	지하 2층, 지상11층
최고높이	42m
주차대수	38대

■ 조감도



감사합니다

